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 이라 한다)는,

양국간 상호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일방 당사국 투자자의 타방 당사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상호간 투자의 증진 및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협정이 양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간의 창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각의 체약당사국에 있어 당해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의 체약당사국에 있어 공공기관·법인·재단·회사·조합 및 협회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조직 또는 구성되고 법인으로 인정되며 본점이 그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 (2) “투자”라 함은 일방 계약당사국의 투자가가 타방 계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영역안에 투자 또는 재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 (가) 저당권·유치권·질권 및 유사한 권리등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한 동산 및 부동산
 - (나) 회사 또는 사업체의 채권, 회사채 및 부채뿐 아니라, 회사 또는 사업체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권
 - (다)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청구권
 - (라) 저작권·상표권·특허·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우하우·상호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 (마)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이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배당·이자·자본이득·사용료·기술지원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브라질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영역을 각각 말하며, 또한 계약국이 자연자원의 탐사 및 이용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양국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상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2.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및 자본의 형태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르는 한, 이 협정에 따른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투자의 증진, 허용 및 보호

1. 각 계약당사국은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들이 자국 영역안에 투자함에 있어 유리한 여건 조성을 장려하며 자국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양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항상 공정하고(공평한 대우가 부여되며 타방 계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각 계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의하여 투자의 실현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하며, 제조허가·기술적·상업적·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계약을 허용하고,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해 고용된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의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 3 조 투자의 대우

1. 각 계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유사한 여건하에서 제3국의 투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2. 각 계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및 청산과 관련하여 타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일방 계약당사국이 아래의 이유로 타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할 어떠한 대우, 편의 또는 특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또는 당사국이 될 모든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대외관세지역·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조약 또는 다른 종류의 지역협력
-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국제협정

제 4 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또는 수익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모든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이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 (1)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해 재산이 몰수될 경우
 - (2)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가 전투행위로 발생되지 않은 또는 그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일 경우,몰수 기간동안 또는 재산의 파괴로 입은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제 5 조 수 용

1.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이하 “수용”이라 함)를 당하지 아니한다. 상기 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며, 수용일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계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조 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과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일방 계약당사국이 현행법에 의거하여 그 영역안에 설립·구성되고 타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거나 또는 기타형태의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송 금

1. 계약당사국은 투자 및 수익에 관련된 지불액의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일방 계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 이자 및 기타 경상소득
- (2)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모든 투자의 매각 또는 부분적·전면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입금
- (3)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 (4) 계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계약당사국 국민의 순소득

- (5) 현존 투자의 유지, 관리 또는 개발에 필요한 추가 금액
- (6) 제4조 및 5조에 관한 보상

2. 송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정상거래에 유효한 또는 송금 당일 유효한 공정환율에 의하여 결정된 환율에 의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 7 조 대 위 변 제

일방 계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투자에 관해 부여한 보증에 의거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계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인정한다.

- (1) 그 국가에서의 법 또는 법적 거래에 따른, 투자자로부터 일방 계약 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의 이전
- (2) 일방 계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의 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 및 당해 투자자의 청구권 집행

제 8 조 일방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협정하의 투자와 관련된 일방 계약당사국과 타방 계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이 협의를 시작한 후로 6월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은 투자자의 재량에 의해 다음에 회부된다.

- (1) 분쟁 계약당사국의 국내 법원
- (2) 이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의 국제중재

3. 상기 두 방법중 하나가 채택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번복할 수 없다. 이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국내법원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투자자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법절차를 철회할 경우 국제중재에 회부가 가능하다.

4.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타방 계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일방 계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제기된 국내구제는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5.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선택할 경우, 분쟁은

(1) 브라질연방공화국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경우, 동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되며, 그 이전까지는 조정, 중재 및 사실심사 절차의 운영에 관한 보조기관에 회부된다.

(2) 1976년 12월 15일 총회 의결 31/98로 채택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설립된 임시재판소에 회부된다. 이 중재 재판소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인은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계약당사국에 의해 임명되고, 1인은 분쟁의 타방당사자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장이 되는 나머지 1인은 위에서 선출된 두 재판관이 임명한다. 만일 세번째 재판관이 두 재판관이 임명된 후 30일 내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장이 임명한다.

6.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 투자가 행해진 계약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결한다.

7.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결정적이고 구속적이며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8. 계약당사국은 일방 분쟁당사자가 상기 판정 또는 판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절차 및 국제중재에 회부된 분쟁 관련사항에 대하여

재판이 종료되기 이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 않는다. 외교적 보호에는 오로지 분쟁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비공식적인 외교적 접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9 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상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 2월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상기 2명의 중재관은 제3국 국민 1명을 지명하며 동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에 의해 중재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함)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다른 2명의 임명일부터 3월내에 임명된다.
4. 이조 제3항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재판소장이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판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재판소장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의 자국측 중재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규정한다.

제 10 조
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의해서 동시에 규율되게 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양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동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금하지 못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 할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협정의 적용

1. 양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이 협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존재한 의견대립이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협정의 발효, 존속 및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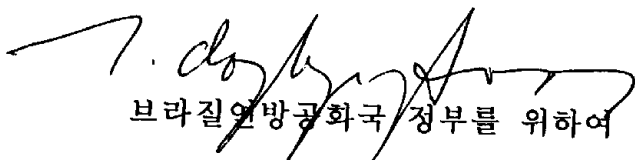
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절차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두번째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최초 또는 다음 유효기간의 종료 1년 전 각 계약당사국이 타방 계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그 이후에도 5년씩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해진 투자에 있어서 이 협정의 조항은 협정 종료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본인 포르투갈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공 르 명